

종 법(宗法)

종정 및 부종정 추대법

- 제1조 본종 종헌 제21조에 의하여 종정 및 부종정 추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- 제2조 종정 부종정은 상당한 수행과 학덕을 겸비하고 선행이 투철하고 별표 자격에 부족됨이 없어야 한다.
- 제3조 종정 부종정은 중앙총회 의결을 거쳐 원로원에서 결정한다.
- 제4조 종정 부종정이 결정되면 추대대비회를 총무원에서 거행하되 추대위원장은 원로원장이 된다.
- 제5조 종정 부종정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추대위원장은 수락을 받아야 한다.
- 제6조 종정에 추대되면 종정 상징 증표로 법모는 비로관으로 법의는 금란가사로 한다.
- 제7조 종정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중앙총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반려 또는 수리한다.
- 제8조 종정추대를 위한 종회의 의결에는 종헌 제27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9조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총회 정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.
- 제10조 종정이 임기중 사임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궐위된 때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종정을 추대하여야 한다.
- 제11조 종정 유고시엔 부종정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제12조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